

제2장

정보공개 대상기관

I. 개 요

II. 공공기관의 의무

III. 정보공개심의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법 제2조, 시행령 제2조)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행정기관(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 포함) 및 그 소속기관
 - ※ 정부조직법상 특별지방행정기관, 부속기관, 합의제 행정기관 포함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법에 따른 기관(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군·구,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⁹⁾ 등)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시·도 교육청, 교육지원청, 교육위원회, 교육감 협의체 등)

●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323개, '16.1.1일 기준)

- 시장형 공기업(14)

구분	(주무기관) 기관명
시장형 공기업 (14)	(산자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력난방공사
	(국토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해수부) 부산항만공사

9) “공공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군·자치구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읍·면·동과 같은 지방행정기관 등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고 지방자치와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포괄하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임. (법제처 법령 해석 06-0038)

- 준시장형 공기업(16)

구 분	(주무기관) 기관명
준시장형 공기업 (16)	(재정부) 한국조폐공사 (문화부) 한국관광공사 (농식품부) 한국마사회 (산자부) 대한석탄공사 (국토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방통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해수부)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16)

구 분	(주무기관) 기관명
기금 관리형 준정부 기관 (16)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인사처) 공무원연금공단 (문화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산자부)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고용부) 근로복지공단 (금융위)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중기청) 중소기업진흥공단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74)

구 분	(주무기관) 기관명
위탁 집행형 준정부 기관 (74)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안전처)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문화부)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아시아문화원 (농식품부)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농림수산물기술기획평가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미래부)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구 분	(주무기관) 기관명
위탁 집행형 준정부 기관 (74)	(산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고용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여가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토부) 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해수부)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보훈처) 독립기념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농진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중기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전략원 (기상청)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식약처)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방통위) 시청자미디어재단

- 기타공공기관(203)

구 분	(주무기관) 기관명
기타 공공기관 (203)	(국조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구 분	(주무기관) 기관명
기타 공공기관 (203)	<p>(재정부) 한국투자공사, 한국수출입은행</p> <p>(교육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p> <p>(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p> <p>(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p> <p>(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IOM 이민정책연구원</p> <p>(국방부) 국방전직교육원,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p> <p>(행자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p> <p>(문화부) (재)국악방송,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예술의전당, (재)정동극장, (재)한국문화정보원,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민생활체육회,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세종학당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진흥(주),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p> <p>(농식품부) (재)한식재단,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p> <p>(산자부)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주)강원랜드, (주)한국가스기술공사, 기초전력연구원,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전력기술(주),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한전KDN(주), 한전KPS(주), 한전원자력연료(주)</p> <p>(복지부) (재)한국보육진흥원, (재)한국장애인개발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적십자사,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재)한국장기기증원, 한국인체조직기증원</p> <p>(환경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p> <p>(고용부)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p> <p>(여가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p> <p>(국토부) (주)위터웨이플러스, (주)한국건설관리공사, 주택관리공단(주),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p>

구 분	(주무기관) 기관명
기타 공공기관 (203)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항공안전기술원 (미래부) (재)우체국시설관리단, 광주과학기술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립 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기초과학연구원, 대구경북과학 기술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울산과학 기술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 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 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데이터 베이스진흥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 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 자력의학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 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 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해수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항로표지기술협회 (금융위)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공정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식약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식품안전정보원 (보훈처) 88관광개발(주) (관세청) (재)국제원산지정보원 (문화재청) 한국문화재단 (기상청) (재)APEC기후센터,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산림청) 녹색사업단 (중기청) (재)중소기업연구원, (주)중소기업유통센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 특허정보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법 제2조 제3호 라목)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시행령 제2조 제1호)
 - 유아교육법 : 국립·공립·사립 유치원, 특수학교, 외국인유치원 등
 - 초·중등교육법 :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 학교(대안학교)

- 고등교육법 : 대학(사립대학 포함¹⁰⁾),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 학교
-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해 설치된 학교 : 경찰대학, 공군사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국군간호사관학교, 국방대학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육군3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해군사관학교, 한국농업학교, 한국폴리텍대학 등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시행령 제2조 제2호)
- 도시철도, 도시개발,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부산관광공사 등 기타공사, 시설·환경·경륜 공단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시행령 제2조 제3호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 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립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
 - 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액(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 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 다.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 라. 지방자치단체와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 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10) 사립대학교는 정보공개 의무기관인 공공기관에 해당됨.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공동체 전체적인 이익에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여기에 정보공개 목적, 교육의 공공성 및 공·사립 학교의 동질성,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및 보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비지원이 한정적·일시적·국부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정보공개법시행령 제2조 제1호의 공공기관의 범위에 해당됨(대법원 2004두2783)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 언론중재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 새마을금고연합회, 새마을운동중앙본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단위농협, 충포화약안전기술협회, 직접판매공제조합, 금융감독원,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낙농진흥회, 한국문화재보호재단, 한국교육방송,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소방공제회, 한국은행,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지방문화원, 한국방송공사 등
-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
 - 대한법무사협회 및 지방법무사회(법제처 09-0161), 한국증권업협회(서울고법 선고 2007누 29163), 지역조합(상주축산업협동조합),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법제처 11-0261)

[판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을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0. 4. 29. 2008두5643, 법제처 해석사례 06-0318, 07-0188)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이 법인의 조직구성과 활동에 대한 행정적 관리·감독 등에서 민법이나 상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일반 법인과 달리 규율한 취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당해 법인에 재정적 지원·보조의 유무와 그 정도, 당해 법인의 공공적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는 별도로 당해 법인에 대하여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업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 각종 사회복지회관, 사회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1. 정보공개 원칙(법 제3조)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정보공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

2.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권 존중 의무(법 제6조 제1항, 제2항)

-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 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계 법령 정비
-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 정비
-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배치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
 - ※ 별도의 정보공개 메뉴 개설, 편리한 접근성 보장 등

3. 행정정보의 공표 등(법 제7조, 시행령 제4조)

공공기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정보통신망 또는 정부간행물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함

*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정보는 제외

● 행정정보 공표 대상

- ①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정보
 - 행정계획 및 그 실시상황에 관한 정보 등

- (기본계획) 중장기 기본계획, 행정계획 등 주요 정책자료
- (통계·조사) 행정계획의 근거·참고가 되는 통계자료, 조사연구 결과 등
- (법령정보) 법령(조례, 지침 포함), 입법예고안, 국회제출 법률안
- (기 타) 국가 주요정책 등한 관한 사항

- 식품·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관련 정보

- (식품) 농산물 안정성 조사, 위해식품 및 유독물 정보 등 각종 검사결과 등
- (보건·위생) 식품위생업소 단속 등 국민의 건강 관련 각종 행정처분 등
- (환경) 환경관련 검사 및 측정결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단속 현황 등
- (치안) 방법방재시설 설치내역, 청소년 범죄현황 등 치안상황 관련 정보

- 교육·의료·교통·조세·건축·상하수도·전기·통신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 (의료·사회보장) 노인·아동·장애인 복지시설 현황, 각종 생활보장급여 수급 기준 등
- (교통) 교통영향분석 평가 결과, 자전거 도로 현황 등
- (조세) 국·지방제세 관련 과세시가 표준액 산정내용, 공시지가 등
- (주택·건설) 주택보급률 및 미분양 현황, 건축허가·착공 통계 등
- (가스, 상하수도) 단수공고, 도시가스 공급정보, 하수처리 현황 등
- (전기·통신) 정전공고, 전기 공급 및 이용현황, 통신사업자 현황 등
- (교육문화) 학교시설 및 개방현황, 문화재 및 문화공간 현황 등

② 국책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상 공개대상 정보

- 분기별 계약발주 계획, 계약체결 및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등
 - (국가계약법) 분기별 발주계획, 계약체결일, 추정가격 또는 예정가격, 계약 체결방법, 계약상대자의 성명, 계약금액,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 (지방계약법)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명, 계약이행기간, 계약상대자 및 계약금액 등 월별 수의계약 내역, 분기별 발주계획 및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1항, 지방계약법 제9조 및 시행령 제31조 및 124조 제1항

- 공공사업에 관한 정보

- 하천, 토로, 사방, 항만, 간척 등의 공공적 토목공사 및 청사 등 각종 공공 시설의 건축공사 관련 사항 등
 - 사업계획, 조사결과보고서, 공공사업 채택기준, 사업실적 등
 - 공공용지 취득면적 및 손실보상액, 보상기준 등 용지취득에 관한 정보
 - 공사 등에 관한 경비계산 기준, 부담금 계산 기준, 준공검사 결과 등

- 기타 계약에 관한 정보

- 입찰실시에 관한 사항 등
 - 입찰 계약의 내용, 입찰의 장소·일시 등 입찰 실시에 관한 사항
 - 입찰 결정사유, 참가 자격요건, 업자 선정기준 등
- 체결과정·결과 관련 정보 등
 - 계약방식, 계약서, 검사조서 등 계약체결 과정 또는 결과 정보

③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에서 공표·공시하도록 정한 정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
 - (국가재정법) 국가채권의 현황 및 그 변동내역,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재정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조세지출예산서, 국가채무관리계획, 중기지방재정 계획 등
 - (지방재정법) 투자심사를 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개요, 투자 심사결과, 지방채발행 심사결과, 발행현황, 추진상황 등

※ 국가재정법 제9조 및 시행령 제5조,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시행령 제41조의2

-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 직위, 사용일시, 사용장소, 사용금액, 사용목적, 참석대상 및 인원 등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

※ 기관장은 물론 주요 간부 등의 집행내역도 포함

- 용자 및 보조금 관련 정보

- 용자 및 보조금 교부지침, 보조사업 실시 지침,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등
- 보조금 교부신청 방법, 보조금 정산보고서 등 보조금 집행에 관한 정보 등

- 국회 및 지방의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 감사 결과에 관한 정보

- 그 밖에 법령에서 공개, 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

④ 그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 기관의 업무특성에 맞게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 사무수행과 관련하여 집계된 검사·조사·처분의 건수, 인허가 등의 건수, 위반 단속건수 등 행정활동의 실적
- 정보공개청구 빈도가 높은 정보 등
- 사회적 이슈가 된 각종 현안사업의 실태조사 결과 등

4.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법 제8조, 시행령 제5조)

●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에 필요한 정보소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정보목록을 제공

- '05. 7. 30. 이후 '주요 문서목록'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목록'으로 범위 확대(시행일 '05.7.30.)
- '05. 7. 30. 이후 생산 정보부터 '정보목록'으로 작성, 이전 생산문서는 기존의 '주요 문서목록' 형태로 작성·비치
 - ※ 원칙적으로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 타 기관접수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목록에는 문서 제목·생산연도·업무담당자·보존기간 등 포함
- 목록 중 제9조 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비공개¹¹⁾
 - ※ 정보내용에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도 목록을 작성·공개하여야 하나 목록(제목) 자체가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외

예 시

생산일자	문서번호	단위업무	문서제목	담당부서명	담당자명	보존기간	공개여부
2011. 4. 21.	공공정보정책과 -10000	정보공개 제도운영	정보공개 제도운영 매뉴얼개정	공공정보 정책과	홍길동	10년	공개

11) 정보목록에서 제외될 정보의 유형 : 정보의 존재 자체가 비밀 사항인 경우, ○○○의 비위 사실 통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에 대한 불시 단속 계획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5. 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법 제8조의2)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 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

- 공공기관까지 모든 공공영역의 공개 가능한 결재문서를 실시간 제공
 - ※ '14.3월 중앙·시도(133개), '15.3월 시군구·교육기관(308개), '16.3월 공공기관(116개)

6.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수립·공개(법 제9조 제3항)

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 안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공개

● 작성 단위

- 직제에 명시된 실(국)·과·팀 및 이와 유사한 단위별로 작성
 - ※ 최소단위가 실국으로 명시되어도 실과 단위로 세분한 소관사항을 대상으로 작성
- 기능이 같은 3차 소속기관 이하 기관은 직근 상급기관에서 작성
예) 우체국, 각급 학교 등

● 작성 방법

① 실(국)·과·팀별 비공개 대상정보 작성

- 작성단위 별로 업무성격을 고려하여 소관사항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 작성
 - ※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작성단위와 비교하여 공개 대상 정보가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 되지 않도록 주의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관련 법령명 및 조항까지 명시

② 기관단위의 비공개 대상 정보를 취합·세부기준 작성

- 기관 담당자는 작성단위별 비공개 대상 정보를 취합·세부기준 작성
 - ※ 필요한 경우 기관별 세부기준 수립을 위한 실무위원회나 TF팀 구성·운영

③ 외부전문가 자문 실시

-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안의 적정성 등 검토
- 작성단위별 비공개 정보를 공개로 할 경우 작성한 실(국)·과·팀과 조정

④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통한 세부기준(안) 확정

-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안)에 대해 최종적인 검증·확정

● 세부기준 공개 및 보완

-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관보·공보·일간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
- 최신판례의 인용, 비공개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된 경우 신속·재분류
- 직제규정 등으로 소관사항의 변경이 있으면 보완·공개

비공개 대상정보 조사 서식(예시)

① 작성단위	② 소관사항	③ 비공개 대상정보	④ 근거
○○과	정보공개 기준의 수립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제5호
		정보공개위원회 위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정보공개 운영실태의 평가	진행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평가자료	제5호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예시: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제5호
○○과	민원행정제도의 개선사항 발굴 및 심사	민원 등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제6호

• 비공개 대상정보 조사서식 작성요령

- ① 작성단위 : 실(국)·과·팀
- ② 소관사항 : 직제규정에 명시된 실·과·팀의 소관사항(단위업무)을 기재
- ③ 비공개 대상정보 : 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를 간략히 기재
- ④ 근거 : 법 제9조 제1항 각호 기재

비공개 대상정보 조사 서식(예시)

1.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작성요령
 - 각 실·과·팀에서 조사한 「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를 기재 후 괄호 안에 근거법령 기재

2. 안보·국방·통일·외교관련 정보(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작성요령
 - 각 작성단위에서 조사한 「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를 기재 후 괄호 안에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

예시) ① 대북한관련 정보수집·분석자료(국가안전보장)
②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 회의록(국방)

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작성요령
 - 각 작성단위에서 조사한 「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를 기재

예시)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 내용

4.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작성요령
 - 각 작성단위에서 조사한 「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를 기재
 - 비공개 대상정보량이 많을 경우 식별이 용이하도록 비공개 유형별로 분류하여 작성

예시) (1)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 ①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이하 「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에 대해서는 위 작성요령을 참조

7. 정보공개 청구내용의 확인 및 안내

● 불필요한 청구의 방지 및 이의신청의 사전예방 노력

- 정보공개 접수담당 공무원은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 사전공표 및 정보 목록을 청구인에게 열람토록 함

● 청구 정보의 특정 범위

-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정보공개청구서에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등을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해야 함
- 이를 위해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전문직원이 합리적인 노력으로 그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문서 등을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을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함(대법원 2007두2555,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0716)

● 정보 존재의 입증 책임

- 해당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개청구자에게 있음(대법원 2010두14800)
-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게 있음(대법원 2003두 12707판결)

8.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며, 예외적으로 단서 규정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법 제9조 제1항)
- 공개여부 및 그 내용과 범위 등의 판단과 결정 여부는 비공개로 인한 국민 불이익과 보호하려는 공익정도를 비교하여 공공기관이 결정

9. 정보공개책임관 지정·운영

● 기관별 「정보공개책임관」 운영(영 제11조의2)

- 정보공개 업무지원체제 강화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시·군·구 포함), 교육청은 실·국장급에서 ‘정보공개책임관’을 지정·운영
- 정보공개업무를 해당기관 주관 하에 책임있게 처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역할 및 기능

- 정보 공개에 관한 업무의 총괄·조정
 - 정보공개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기반 구축
 - 정보공개 처리절차 준수 및 사전정보공개 이행실태 확인·점검
- 정보공개심의회 관련 사항
 - 공개결정이 곤란한 경우, 이의신청 사항 등에 대한 심의 지원
 - * 원칙적으로 출석회의를 개최해야 함, 부득이 서면회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대상을 최소한으로 한정하고 2회 연속심의 지양
- 소속기관 또는 시군구에 대한 정보공개 업무의 지도·지원
 - 소속 또는 시군구 담당공무원 지도·교육 등을 주관하여 실시
 - * 소속 또는 시군구 정보공개 문의를 1차적으로 각 부처 및 시도에서 처리
- 정보공개 업무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
 - 기관별 규모·특성 등을 고려, 소속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

Ⅲ

정보공개심의회

1. 개요

●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 위원 수 : 위원장 포함 5~7인
- 외부위원 : 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2은 해당 국가기관 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
 - ※ 법 제9조 제1항 제2호(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 및 제4호(재판·수사·검찰·행형 등) 해당사항을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국가기관은 최소한 1/3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
- 위원장 : 위원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국가기관 등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

● 위원의 임기

- 당연직 위원 : 해당 직위에의 재직기간
- 위촉직 위원 : 2년(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외부전문가 위촉시 배제 대상(예시)

- 당해 기관 및 소속·산하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전직 직원이라도 가급적 배제)
- 다른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원, 해당 교육청의 교육위원
- 직접적인 업무 감독, 관할 등의 관계에 있는 기관(유관 기관, 협회 등)의 임직원

2. 대상기관

● 심의회 설치 의무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시장형 및 준시장형)
- 업무성격, 업무량 등을 고려, 그 기관 또는 소속 기관에 1개 이상 설치·운영

● 심의회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은 기관

-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등
- ※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 여부 및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

3. 심의회 운영

● 심의회의 심의 대상

-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정보공개법 제18조 및 제21조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 그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심의회의 심의 예외대상

- 비·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¹²⁾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 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 제3자가 정보공개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12) 같은 내용이란 청구취지와 청구 내용이 명백한 동일한 내용의 청구로 심의회 결과가 동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를 말함

● 정보공개심의회 결과 조치

- 심의회의 결정 사항을 존중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공개·부분·비공개 결정을 문서로 통지
- 처분권자는 공공기관의 장이므로 심의회 명의를 아니라 공공기관장 명의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함(대법원 2001추 95¹³⁾ 참조)
-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 이유,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시행령 제18조 제3항)
-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하는 경우 제3자에게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 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법 제21조 제2항)

1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등 관련 규정들의 취지를 종합할 때,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법적인 의무와 권한을 가진 주체는 공공기관의 장이고, 정보공개심의회는 공공기관의 장이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보아 의견을 요청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여 심의하는 것임

FAQ

001 사전에 공표된 행정정보의 게시 시한

 **답 변**

- ▣ 정보공개법 제7조에 의거 공공기관은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대한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합니다.
- ▣ 사전에 공표된 행정정보의 게시 시한은 해당 정보의 성격과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각 공공기관에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002 정보공개심의회 서면심의 가능 여부

 **답 변**

- ▣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에 의거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설치된 국가기관 등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자체 운영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서면심의도 가능하나, 심의 대상을 최소한으로 한정하고 2회 연속심의를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003 이미 공표한 행정정보에 대한 공개청구

 **답 변**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공공기관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그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보

공개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는 그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이미 공개된 정보의 경우 그 소재한 인터넷 주소 및 게시장소 접근 경로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공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의 장이 일정한 정보에 대하여 공개의 범위,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정보에 대해 그 소재한 인터넷 주소 및 게시장소 접근경로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공개 결정한 것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중앙행심 2013-07091 재결 참조)



004 정보공개심의회의 결정과 달리 조치할 수 있는지

답 변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등 관련 규정들의 취지를 종합할 때,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법적인 의무와 권한을 가진 주체는 공공기관의 장이고, 정보공개심의회는 공공기관의 장이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보아 의견을 요청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여 심의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1추 95 판결 참조)
- 따라서, 공공기관의 장은 정보공개심의회 결정과 달리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공개심의회는 정보공개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제도임을 감안할 때, 정보공개심의회 결정과 다른 조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005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의 강행성

 **답 변**

-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결과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대법원 2001추 95 판결 참조) 심의 자체는 정보공개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거쳐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 다만, 예외적으로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 가~라 목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반드시 거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006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의무

 **답 변**

- ▣ 정보공개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은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그 기관 또는 소속기관에 1개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심의회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은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 여부 및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관할 상급기관에 심의를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은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입니다.

007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전문가 위촉 취지는

 **답 변**

- ▣ 정보공개법 제12조에 의거 심의회는 위원장을 제외하고 2분의 1을 해당 국가 기관 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 이는 국민의 입장에서 공공기관의 이해와 독립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판단을 하도록 한 것으로, 공공기관과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영향력 범위에 있는 인사는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008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을 외부위원으로 가능한지

☑ 답 변

- ☐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전문가 위촉 시 배제대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원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 바, 이는 국민인 청구인의 입장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의회의원의 정보공개심의회 참석으로 인한 불공정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보공개 운영을 위하여 이러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009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공개 가능 여부

☑ 답 변

- ☐ 심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다만,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경우 해당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의 확보와 국가기밀 및 개인정보 보호의 가치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010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성명 공개 가능 여부

☑ 답 변

- ☐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의 성명은 개인에 관한 정보이기는 하나,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공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011

종전에는 공개하던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세부기준 개정이 가능한지(법제처 10-0082)

답 변

- ▣ 공공기관이 종전에는 공개하던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 공공기관이 항상 작성 또는 수집하는 같은 내용의 정보라고 하더라도 사회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 있고, 이전에 공개대상정보라고 하여 이를 영구히 공개대상정보라고 보아야 할 근거가 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 ▣ 따라서,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여부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전에 공개하였던 정보라도 이후 공개가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비공개대상정보라고 판단할 수 있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추상적·일반적으로 규정된 사유들을 해당 기관의 업무성격 및 구체적 사안을 고려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정하는 세부기준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종전에는 공개하던 정보를 비공개대상 정보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으로 세부기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제2장
정보공개 대상기관



012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이란

답 변

- ▣ 정보공개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추상적·일반적으로 규정된 사유 등을 해당 기관의 업무성격 및 구체적 사안을 고려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정하는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 공공기관은 변화가 빠른 정보의 특성과 정보 공개 확대 추세 등을 감안, 세부기준을 주기적(년 1회 등)으로 점검하여 정보공개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정보 공개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013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이 대외적 기속력이 있는지

☑ 답 변

- ▣ 정보공개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 ▣ 따라서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은 대외적으로 국민 및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위 규정을 비공개대상정보 해당 여부에 관한 근거규정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014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경우 정보목록에 기재된 공개구분과 달리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답 변

- ▣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정보목록상의 공개 구분대로 결정함이 타당
- ▣ 다만, 정보목록상 공개구분은 정보생산시점에 설정된 것으로 실제 정보공개 업무 처리 시와 시점상 차이가 있어 변경된 사정을 반영할 여지가 있음